

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

제정 2026년 4월 6일 규칙 제997호

제1조(「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법인등기부등본”을 “법인등기사항증명서”로 한다.

제2조(「오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오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4호서식 중 “법인등기부등본”을 “법인등기사항증명서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